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점검 등 대상 명확화 및 세부사항 신설 등〉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556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안전점검 등 대상 명확화 및 세부사항 신설	4
2. 소규모 항만시설 성능평가 규정 신설	11
3. 항만관련작업선에 대한 장비검사 규정 신설	15
4.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개정	20
5. 부칙	24
IV . 참고자료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18.
3.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만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안전점검을,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안전점검의 대상을 방파제·파제제 등을 포함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과 그 외의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파제제 등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나 「시설물안전법」은 해당 법에 따라 방파제·파제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항만시설 소유자는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음.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에 대하여만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항만과 같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능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8조).

나. 항만시설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항만관련작업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안전점검 등 대상 명확화 및 세부사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향만시설 안전점검 대상을 「시설물안전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점검의 주체를 ‘향만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확대하며, 안전등급 지정·전문기관 대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세부 절차를 법제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향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u>향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	제38조(향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u>향만시설의 소유자 또는 향만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향만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u> ----- <u>---안전점검 및 안전진단---</u> ----- <u>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는 향만시설(갑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u>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신 설>

<신 설>

아니하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같은 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제3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

-----긴급안전점검(이하 “정기안전점검 등”이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항만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등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정기안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항만시설소유자등 또는 제3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정기안전점검등을 실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안전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항만시설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제5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결과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항만시설소유자등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항만시설소유자등-----
-----항만시설소유자등인-----

다. <u><신 설></u>	-----. <u>⑧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범위·시기·절차·방법, 정기안전점검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결과보고서의 제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외의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시설물안전법」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항만법 시행령」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러나 「시설물안전법」³⁾은 방파제 등도 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법률 사이의 대상 범위의 차이로 인해 항만시설 소유자가 항만시설 안전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관해서는 「시설물안전법」과 달리 안전등급 지정·전문기관 대행·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시설물안전법」에 부합하도록 안전점검의 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38조제1항제2호의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등급 지정·전문기관 대행·비용 산정 기준 고시·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3) 「시설물안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도록 세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8조제1항제1호는 여전히 「시설물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설물안전법」 제12조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제1항)이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2항) 그리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제3항)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⁵⁾는 시설물의 붕괴나 전도 등 실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8조제1항제1호는 점검의 종류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법」과 달리 모든 대상 시설이 긴급안전점검 및

4)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2.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④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설물안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제3종시설물은 제외)을 상시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입법의 명확성과 행정적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점검의 종류를 「항만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설물안전법」 제7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둘째, 안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은 ‘항만시설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항만법」은 ‘항만시설’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고 ‘항만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표현을 수정하거나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는 안전점검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등급 지정·안전점검 대행·대행비용 산정·점검 결과 작성 및 제출 등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6) ※ 입법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안전점검) ①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수지·댐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저수지·댐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규모 항만시설 성능평가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소규모 계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의2(항만시설의 성능평가) ①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소규모 계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항만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항만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소유자등은 성능평가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항만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등이 성능평가

를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성능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실시 범위·시기·절차·방법,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결과보고서의 제출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 「시설물안전법」⁷⁾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류시설 현황>

계류시설 접안능력(톤급)	시설물 수			비고
	국가관리 (지방청+PA)	지방관리 (지자체)	계	
5만톤급 이상	69개소	8개소	77개소	1,2종 시설물 (229개소)
5만톤급 미만 ~ 3만톤급 이상	44개소	2개소	46개소	
3만톤급 미만 ~ 1만톤급 이상	90개소	16개소	106개소	
1만톤급 미만 ~ 5천톤급 이상	45개소	23개소	68개소	기타 시설물 (517개소)
5천톤급 미만 ~ 3천톤급 이상	31개소	18개소	49개소	
3천톤급 미만 ~ 1천톤급 이상	47개소	26개소	73개소	
1천톤급 미만	174개소	153개소	327개소	
총 계	500개소	246개소	746개소	

7) 「시설물안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은 [참고 2] 참조

그러나 1만톤급 미만의 계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성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개정안은 「항만법」에 성능평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시설물안전법」과 유사하게 성능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⁸⁾

- 해양수산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제1·2종 계류시설) 외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시설물안전법」상 유사규정은 [참고 1] 참조

3. 항만관련작업선에 대한 장비검사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에 기중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한 선박으로서 항만 구역 내에서 자재를 선적하거나 항만구역 밖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이하 “항만관련작업선”이라 함)의 장비(기중기)를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항만관련작업선에 대한 장비검사) ① 선박에 기중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한 선박으로서 항만구역 내에서 자재를 선적하거나 항만구역 밖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이하 “항만관련작업선”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선박의 기중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
1조까지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선박에 탑재된 기중기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검사업무를 제35조에 따른 검
사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
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절차·방법 및 제4항에 따
른 수수료의 금액·납부 방법·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이 활발해짐⁹⁾에 따라 기중기를 탑재한 작업선들이 자재를 하역하고 반출입하는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항만관련작업선에 탑재된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규정이 미비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항만관련작업선에 탑재된 장비(거중기)에 대한 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항만관련작업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9조의2제1항은 ‘항만구역 내에서 자재를 선적하거나 항만구역 밖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항만관련작업선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항만법」의 목적¹⁰⁾ 및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항만법」의 목적은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며, 개정안은 항만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의 사업을 위해 항만구역 내에서 자재를 하역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사

9) 해상풍력 사업 운영 및 추진현황은 [참고 3] 참조

10) 「항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 원안은 항만구역 밖에서 항만운영과 무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항만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 및 「항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문구를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항만구역 내에서 자재를 하역하는 선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9조의2 제2항은 수수료 수납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선박안전법」¹¹⁾을 참고하였을 때, 수수료 수납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법」 제35조¹²⁾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해양풍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기구 재 및 해상장비 등이 항만구역에서 하역과 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관련 작업선 장비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나,

항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항만구역 내에서 하역이 이루어지

11) 「선박안전법」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항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항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항만법」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는 선박에 고정 탑재한 기중기를 검사 대상으로 한정하도록 문구를 보완하고 검사 내용 및 수수료 수납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며 장비를 조종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38조제6항·제38조의2제1항·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 9. (생략)	제110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 9.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7. 8. (생략)	제113조(과태료)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의2.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u>
<u><신 설></u>	<u>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작성·제출한 자	<u>8의3. 제38조제6항(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u><신 설></u>	9. 제38조제7항----- ----- ----- ----- ---
<u><신 설></u>	<u>9의2.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9의3.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u>
10. ~ 16. (생략)	<u>사를 받지 아니한 자</u>
②·③ (생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 체계를 합리화하고, 신설 제도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항만시설의 안전점검이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시설물안전법」¹³⁾도 단순히 성능평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실시하지 아니

13) 「시설물안전법」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시설물안전법」은 성능평가 미실시에 대해서 다른 위반사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도 성능평가 미실시의 과태료 부과 수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 종합평가를 통해 내구수명 예측 및 장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시 다른 점검 및 절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소유자등이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와 항만관련작업선에 대한 장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에는 동의하되,

유사입법례인 「시설물안전법」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 법규를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등은 공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조치인 점 등을 이유로 형벌 법규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제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제38조의 항만시설의 안전점검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 개정안과 관련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

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⁴⁾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⁵⁾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이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한 안 부칙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⁶⁾

14)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시설물안전법」 상 유사규정

개정안	「시설물안전법」상 규정
안 제38조제2항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38조제3항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 제38조제4항	제37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안 제38조 제5항, 6항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38조의2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	「시설물안전법」상 규정
	⑤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는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실시자의 자격, 성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0. 7. 28.>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성능평가대상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나. 철도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3. 항만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4. 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5. 건축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6. 하천	
가. 하구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7. 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8. 옹벽 및 절토사면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3.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4.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5. "연안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말한다.
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9. 위 표의 광역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용수전용댐은 제외한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참고 3 해상풍력 사업 운영 및 추진현황

□ 해상풍력 발전사업 운영 현황

- (준공 및 운영) 제주 한림/탐라(100MW/30MW), 전남 영광 (34.5MW), 전남 신안(96MW), 전북 서남권(60MW) 등 5개소 320.5MW

지역	발전소명	용량(MW)	사업자	위치	준공	비고
제주	탐라 해상풍력	30 (3MW×10)	탐라해상 풍력발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일원	'17.9월	국내 최초 상업용
전남	영광백수 해상풍력	34.5 (2.3MW×15)	영광 풍력발전	전남 영광군 백수읍 상·하사리 일원	'19.4월	육·해상 복합 (육상, 45.1MW)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60 (3MW×20)	한국 해상풍력	전북 부안군 위도 및 고창군 일원	'20.1월	2.4GW 확대 계획
제주	한림 해상풍력	100 (5.56MW×18)	제주한림 해상풍력	제주시 한림읍 수면리 일원	'25.12월	국내 최대용량 상업용
전남	전남해상풍력	96 (9.6MW×10)	전남해상 풍력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동쪽 일원	'25.5월	고정가격 계약 선정사업

□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현황

- 현재 해상풍력발전단지 102개소 인허가가 완료되었으며, 「해상풍력법」 제정(25.3)으로 주요 해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

<해상풍력단지 위치 및 단계>

